

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232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2327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2026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익현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변론 종결2021. 10. 15.

판결 선고2021. 11. 26.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2026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3.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1) 피고는 C에게 별지2 채권의 표시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7. 13. 접수 제7272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 2018. 7.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각주2) 제6행의 "(2018. 10. 15.경)"을 "(2018. 10. 5.경)"으로, 제9쪽 밑에서 제6행의 "(2018. 10. 15.)"를 "(2018. 10. 5.)"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에서 2021. 11. 25. 화해권고결정으로 분리 확정된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사공민

판사정신구

별지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① 2018. 7. 13. 접수 제7272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 체결된 2018. 7.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② 2018. 10. 24. 접수 제11143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 체결된 2018. 7.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모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위 ②항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2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의 양도를 구하고 있다.

2)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7. 13. 접수 제7272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 2018. 7.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